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 기준

[시행 2025.8.1.] [기준 2025.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시행세칙, [별표23]구매입찰공고(일반입찰용)"에서 위임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의 동등성 확인과 관련하여 물자의 구매규격서 또는 상세 규격정보에 특정규격이 표기되어 있는 일반산업등급(S) 품목에 대하여 당해 규격과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하다고 공고된 품목을 공급사가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동등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제2조(정의) ① "물자"란 발주자가 사용 중이거나 저장 중 또는 조달 중인 물품과 자재로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

1. '정비부분품(SPAR)'란 발전설비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한 것으로서 사용 후 발전설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계측및공기구(TOOL)'란 설비에 부착되지 않은 수공구 및 휴대용계측기를 말한다.
3. '설비자재(FACI)'란 기존 발전소 발전설비의 증설, 교체, 대체를 위한 것으로 설치 후 설비로 관리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삭제<2025.7.15.>
5. 삭제<2025.7.15.>
6. 삭제<2025.7.15.>
7. 삭제<2025.7.15.>
8. 삭제<2025.7.15.>

②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찰 전 입찰예정자, 입찰 시 입찰자, 계약 후 계약상대자를 포함)을 말한다.

③ '발주자'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또는 그의 위임자를 말한다.

④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이란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 안전성영향등급(A)으로 적용되지 않는 품질등급의 품목을 말한다.

⑤ '특정규격'이란 구매규격서 또는 상세 규격정보에 식별기준 정보의 수단으로 명시된 특정 상표정보(제작사, 모델번호, 부품번호등) 를 말한다. <개정 2025.7.15.>

⑥ '특정규격 제품'이란 구매규격서 또는 상세 규격정보에 명시된 '특정규격'과 일치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7.15.>

⑦ '동등성 확인'이란 '특정규격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호환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조달·운용 중인 설비(물품)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 요구되는 성능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5.7.15.>

⑧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이란 본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에 따라 '동등성 확인'이 완료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가동원전의 자재유형이 정비부분품(SPAR), 계측및공기구(TOOL) 및 설비자재(FACI)인 일반산업등급(S등급) 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등성 확인 품목에 적용한다. <개정 2025.7.15.>

1. "발주계획 및 규격 사전공고"에서 "동등품 가능여부(Y/N)"란에 "Y"로 분류된 품목
2. "입찰공고"에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하다고 공고된 품목

② 이 기준은 기성품 구매 건에 적용하며, 제작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5.>

③ 상기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에 대하여 규격서, 입찰공고 등 입찰 및 계약서류에서 본 기준의 요건 적용을 명시한 경우 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제4조(확인절차 및 기준) ①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계획 및 규격 사전공고" 및 "입찰공고" 기간 중 공고된 품목의 규격정보와 일치하는 '특정규격 제품' 및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의 제작 및 공급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②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는 '특정규격 제품'과 상이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을 납품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마감일 전에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납품 확인 요청서'(서식1 참조)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5.>

③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납품 확인 요청서'의 규격비교는 품목별 필수특성(별표1)을 참조하여 선정 및 평가하며, 이와 관련된 상세 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자 내부지침서 "표준지침-9260-05: 대체품 동등성 평가" 및 미국전력연구소 지침서 "EPRI 1008256: Guidelines for the Technical Evaluation of Replacement Items in Nuclear Power Plants"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5.>

④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납품 확인 요청서'의 필수특성 등의 자료 외에 발주자가 해당 품목의 사용 특성 및 용도 요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시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5.>

⑤ 특정 상표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속성정보만 표기된 품목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규격과 모두 일치하는 제품을 납품할 때에는 확인 요청서 제출 및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제5조(유의사항) ①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는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납품 확인 요청서'(서식1)를 작성한 다음,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의 '이의신청 통합관리' 링크배너를 이용(구분: 승인요청)하여 제출하고 발주자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승인여부를 기입한 답변을 등록하거나 직접 회신해야 한다. 단,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 '계약업무관련 이의신청 등 처리지침'과 상충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5.7.15.>

② 발주자가 상기 ①항의 요청자에게 발신한 추가 필요사항 요청일자는 회신일자를 갈음한다.

③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납품 확인 요청서' 제출 및 승인(또는 불승인)에 따른 부담비용 및 소요기간은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이다.

④ 공급사(또는 계약상대자)는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납품 시 승인받은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납품 확인 요청서'(서식1) 및 발주자의 회신(승인)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5.7.15.>

이 기준은 2025년 8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